

|         |             |
|---------|-------------|
| 의 안 번 호 | 제 호         |
| 의결연월일   | 2020. 11. . |

|     |
|-----|
| 의 결 |
| 사 항 |

##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(안)

|       |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|
| 발의연월일 | 2020. 11. . |
| 발 의 자 | 이지연 의원 외 1명 |

#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(안)

|          |  |
|----------|--|
| 의안<br>번호 |  |
|----------|--|

발의연월일 : 2020. 11. .

발 의 자 : 이지연·권재욱 의원

## 1. 제안이유

제245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구미시의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· 운영하고자 함.

## 2. 내 용

가. 구성인원 : 13명(위원장 1명, 부위원장 1명, 위원11명)

나. 존속기간 :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

다. 활동내용 :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

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

## 3. 관련법령

가. 지방자치법 제56조(위원회의 설치)

나.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(특별위원회)

## 관련법령

### 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56조(위원회의 설치)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·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·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.

### □ 「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」

제7조(특별위원회)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.

④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.